

목 차

■ 공정위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

■ 심결/판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판결 5

■ 해외 동향 ■

미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 발표 6

■ 공정위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분야별 핵심과제]

3대 분야	6대 핵심과제
공정경제 포용기반	①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②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혁신경쟁 활력제고	③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④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⑥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1. '갑을관계' 규제

2020년에도,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 중형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19년 3개→'20년 6개).

2.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소기업집단의 내부거래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집단의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신사업·성장산업' 규제

플랫폼 산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정비될 것입니다.

-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 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이 가동**됩니다.
- 최근 문제된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는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균형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4. '민생분야' 경쟁촉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감시는 강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 국민 안전과 건강(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하는 3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하도급법 적용면제 사업자 기준을 상향하고, 심사 불개시/경고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5.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므로, 전면적인 약관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할 계획입니다.
-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6. 자율적 공정거래·상생문화

자발적,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공정거래협약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기업 포상을 확대하고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심결/판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A방송사의 모회사인 원고가 B방송사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A방송사에 '일정기간 수신료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방송사에게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A방송사는 이미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A방송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A방송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정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의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후 그 불이행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면 그때 불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이행강제금 규정이 규제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해외 동향 ■

미 법무부 · 연방거래위원회,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 발표

1. 시장획정에 고려하는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2010년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에서 제품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가상독점테스트(hypothetical monopolist test)' 및 'SSNIP 테스트'가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가상독점테스트'는 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가상의 독점기업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켰을 경우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SSNIP 테스트는 그러한 독점기업이 가격을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게 상승(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시켰을 경우를 고려하는 테스트입니다. 지리적 시장을 획정할 때는, '공급자 위치' 및 '고객 위치'를 추가로 고려하고, 시장참여자 · 시장점유율 ·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때는 '관련 제품(related products)의 경쟁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항(safe harbor)'에 해당하는 '20% 조항'(20% threshold)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고, 관련 상품의 사용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법무부와 FTC는 해당 결합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기준으로 '민감한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최근 FTC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FTC는 2019년 1월 사무용품 도매업체인 Staples의 Essendant 인수 사건에서 동의명령(consent decree)를 내렸는데 당시 Rohit Chopra 위원과 Rebecca Slaughter 위원이 기업인수를 통해 민감한 사업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FTC 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어 변경 없이 그대로 채택이 될지는 두고 봐야합니다. FTC 의원 중 일부는 본 개정안이 과거 심사지침을 대체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권의사를 표했습니다. 곧 본격적인 공개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미칠 영향도 귀추가 주목됩니다.